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건설정책과	3
○ 건축도시과	43
○ 교통정책과	73
○ 도로철도항공과	117
○ 토지관리과	183
○ 종합건설사업소	205
○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213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223

< 특 별 회 계 >

○ 균형발전 특별회계	249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55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65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1. 도시건설행정분야 교류 등	6
2.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개최 ..	8
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수립연구용역 ..	10
4.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12
5. 인주면 도시계획시설 지원	14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지원	16
7. 국도40호~운곡사거리 연결도로 확포장	18
8. 청양 주공아파트~구)국도29호 연결도로	20
9.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	22
10. 도심 속 안전하고 깨끗한 “꿈꾸는 놀이터” 조성	24
11. 부여읍 쌍북리 학교주변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도민참여) ..	26
12. 어린이공원 안전등 보강(도민참여)	28
13.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30
14.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32
15. 계룡제일문 설치	34
16.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성립전)	36
17.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성립전)	38
18.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사업(성립전)	40

도시건설행정분야 교류 등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국외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불가
- 사 업 량 : 포럼 등 건설행정분야 교류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포럼 개최 등 건설행정분야 교류회 개최
- 지원 근거 : '16. 4. 21.(도 건설교통국+구이저우성 주택·도농 건설청) 업무협약

도시건설행정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해 매년 교류회 개최
 ※국내외 정서를 반영, 중국 산둥성 및 다른 국가와의 교류 확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행정분야 교류회 개최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18,000	0	-18,000		
국 비							
도 비	0		18,000	0	-1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7,280	720	96%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생산·판매되는 건설자재를 사용자(공공발주기관, 건설사업자, 건축주 등)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건설자재 소비 촉진
 - 지역대학에서 배출되는 건설분야 전문인력이 지역 우량 건설업체 및 신기술개발업체, 자재생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도내
- 사업 기간 : '20년 하반기(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감염·전파 장기화에 따라 '21년도로 순연 개최
- 사 업 량 : 박람회 개최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7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 박람회 개최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230,000	0	-230,000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0		230,000	0	-230,000		도 금고 협력사업

* 보조율 : 기타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
2020년 (2021~2025)	-	-	-	-	-	-	2020.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	이남재 (행) 2810	이상호 (행) 4605	강현직 (행) 2815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건설정책 지원
세부사업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산업인 건설 산업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그동안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의 문제점 도출 및 충남 지역 건설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제도의 운용을 위한 보완사항과 지역 건설업체의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의 발굴·시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전역(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3. 10. ~ 2020.11. 9.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9,457천원**(도 89,457)
- ※ 증감 사유 : 연구용역 낙찰차액 543천원 감액
- 사 업 량 : 충남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업체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지역 건설 산업의 현황 및 충남지역 건설 산업 정책·제도 추진 성과평가, 충남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한 정책·제도 수요 분석, 충남지역 건설 산업의 장·단기 전망 및 수요변화 예측, 충남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의2 1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용역 : 89,497천원 (기정액 : 90,000천원 - 낙찰액 : 89,457천원 = 낙찰 차액 54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9,457		90,000	89,457	-543		
국 비							
도 비	89,457		90,000	89,457	-543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19.09.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	이남재 (행) 2810	이상호 (행) 4605	강현직 (행) 4624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지역개발 지원
	세부사업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기반시설) 지원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5개 시군 일원(천안, 아산, 서산, 논산, 계룡)
- 사업 기간 : 2018. 1. 1. ~ 2027.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704,000천원** 【기정액 : 4,704,000천원(도비), 경쟁액 : 4,000천원(도비), 4,700,000천원(부담금)】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5개 시군 5개 기반시설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논산시
- 사업 내용 : 도로, 공원,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 조성
- 지원 근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도 4,704,000 시군 2,295,000)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개 시군 5개 기반시설사업 ・ 천안 거점지역 : 1개 사업 4,379,000천원(도 3,104,000 시군 1,275,000) ・ 아산 거점지역 : 1개 사업 820,000천원(도 700,000 시군 120,000) ・ 서산 거점지역 : 1개 사업 600,000천원(도 300,000 시군 300,000) ・ 계룡 거점지역 : 1개 사업 600,000천원(도 300,000 시군 300,000) ・ 논산 거점지역 : 1개 사업 600,000천원(도 300,000 시군 3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0,668,000	2,424,000	4,704,000	4,704,000	0	53,540,000	
국 비	2,424,000	2,424,000					
도 비	53,544,000		4,704,000	4,000	-4,700,000	53,540,000	
시군비							
부담금	4,700,000		0	4,700,000	4,7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중교통) 계정으로 90% 지원이었으나, '20년 지방이양(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1,0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역발전팀	이남재 (행) 2810	여형구 (행) 4606	강기석 (행) 4628

인주면 도시계획시설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대형 물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인주면소재지에 우회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원활한 물류수송 및 지역주민 교통안전 확보
- 사업 위치 :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 1. ~ 2020. 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 【기정액 : 1,000,000천원(도비), 경정액 : 1,00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0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업 량 : 도로 개설(2차로) L=90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2차로, L=900m,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주면 도시계획시설 지원 : 2,000,000천원(도 1,000,000, 시군 1,000,000) ○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 : 2,000,000천원 - 공사비 1식 : 2,000,000천원 토 공 : 1,000,000천원, 배 수 공 : 500,000천원, 부 대 공 : 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0	3,000,000	
국 비	0						
도 비	3,500,000	2,000,000	1,000,000	0	-1,000,000	1,500,000	
시군비	4,5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0	1,500,000	
부담금	1,000,000		0	1,000,000	1,0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1,0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립해양생태자원관, 장항국가산업단지 등 서천군의 국가산업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 사업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201-1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19.1.1. ~ 2021.12.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 【기정액 : 1,000,000천원(도비), 경정액 : 1,00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0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로 개설 (L=1.0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립해양생태자원관 진입도로 개설 지원 : 2,000,000천원(도비 1,000,000, 군비 1,000,000) ○ 진입도로 개설 지원 : 2,000,000천원 － 공사비 1식 : 2,000,000천원 연약지반처리 - 500,000천원, 토 공 - 500,000천원, 구 조 물 공 - 500,000천원, 포장공 - 300,000천원, 상하수도 공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8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0	800,000	
국 비							
도 비	1,4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400,000	
시군비	2,4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400,000	
부담금	1,000,000		0	1,000,000	1,0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1,0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국도40호~운곡사거리 연결도로 확포장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산업단지와 합덕읍 소재지의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라 국도40호~운곡사거리 구간의 원활한 소통 및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 사업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1.~ 2020.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 【기정액 : 500,000천원(도비), 경정액 : 50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B=19.5m, L=20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도로 개설(4차로) L=200m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도40호~운곡사거리 연결도로 확포장 지원 : 1,000,000천원(부 500,000, 시군 500,000) ○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 - 공사비 1식 : 1,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1,000,000	1,000,000	0		
국 비							
도 비			500,000	0	-500,000		
시군비	500,000		500,000	500,000	0		
부담금	500,000		0	500,000	5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청양 주공아파트~구)국도29호 연결도로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청양 주공아파트~구) 국도29호간 도로 연결을 통해 청양읍 소재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 사업 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9.1. ~ 2021.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 【기정액 : 500,000천원(도비), 경정액 : 50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0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B=25.0m, L=46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
- 사업 내용 : 도로 개설(4차로) L=460m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양 주공아파트~구)국도29호 연결도로 확포장 지원 : 2,000,000천원(도 500,000, 시군 1,500,000) ○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 - 공사비 1식 : 2,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850,000	2,600,000	2,000,000	2,000,000	0	1,250,000	
국 비							
도 비	0		500,000	0	-500,000		
시군비	5,350,000	2,600,000	1,500,000	1,500,000	0	1,250,000	
부담금	500,000		0	500,000	5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25%, 시군비 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년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자동실효제 시행('20.7.1) 시기 임박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 위치 : 5개 시군(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4.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00천원** 【기정액 : 3,000,000천원(도비), 경정액 : 3,00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0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식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지원 : 10,000,000천원(도비 3,000,000, 시군비 7,000,000) ○ 아산시(권곡문화공원) : 총 3,700,000천원(도비 1,110,000, 시군비 2,590,000) ○ 서산시(석림근린공원) : 총 2,000,000천원(도비 600,000, 시군비 1,400,000) ○ 논산시(채산근린공원) : 총 600,000천원(도비 180,000, 시군비 420,000) ○ 예산군(창소근린공원) : 총 2,000,000천원(도비 600,000, 시군비 1,400,000) ○ 태안군(환동근린공원) : 총 1,700,000천원(도비 510,000, 시군비 1,19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00		10,000,000	10,000,000	0	40,000,000	
국 비							
도 비	12,000,000		3,000,000	0	-3,000,000	12,000,000	
시군비	35,000,000		7,000,000	7,000,000	0	28,000,000	
부담금	3,000,000		0	3,000,000	3,0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도심 속 안전하고 깨끗한 “꿈꾸는 놀이터” 조성(도민참여)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심 속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도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58-1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 【기정액 : 150,000천원(도비), 경정액 : 15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친환경 놀이터 조성 1곳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친환경 놀이터 조성 1곳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꿈꾸는 놀이터 조성 : 총 300,000천원(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공원정비 : 2,000㎡ × 50천원 = 100,000천원 - 놀이시설 설치 : 120,000천원 - 기타 부대시설 등 : 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300,000	300,000	0		
국 비							
도 비	0		150,000	0	-150,000		
시군비	150,000		150,000	150,000	0		
부담금	150,000		0	150,000	15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부여읍 쌍북리 학교주변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도민참여)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부여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필요
- 사업 위치 :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15-1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 【기정액 : 150,000천원(도비), 경정액 : 15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인도개설 L=70.0m, B=2.5m, 도로개설 L=140m, B=6.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인도 및 도로 개설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주변 인도 및 도로개설 : 총 300,000천원(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도로 및 인도개설 : L=140m × 2,142천원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300,000	300,000	0		
국 비							
도 비	0		150,000	0	-150,000		
시군비	150,000		150,000	150,000	0		
부담금	150,000		0	150,000	15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어린이공원 안전등 보강(도민참여)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공원 중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부실한 공원 설비를 보완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도내 어린이공원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 【기정액 : 5,000천원(도비), 경정액 : 5,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공원 안전등 전기시설 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공원 안전등 정비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린이공원 안전등 보강 : 총 10,000천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 안전등 정비 : 9,000천원 - 기타 부대시설 등 :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10,000	10,000	0		
국 비							
도 비	0		5,000	0	-5,000		
시군비	5,000		5,000	5,000	0		
기 타	5,000		0	5,000	5,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신도안~세동간 광역도로사업과 병행한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반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1. ~ 2020.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 【기정액 : 200,000천원(도비), 경정액 : 20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3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B=20.0m, L=2,08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 사업 내용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반시설 확충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 2,300,000천원(도비 200,000, 시군비 2,100,000) ○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 : 2,300,000천원 • 토목 공사비 : 1,500,000천원 • 관급 자재대 : 780,000천원 • 기타 부대비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200,000	4,900,000	2,300,000	2,300,000	0		
국 비	800,000	800,000					
도 비	1,300,000	1,300,000	200,000	0	-200,000		
시군비	4,900,000	2,800,000	2,100,000	2,100,000	0		
부담금	200,000		0	200,000	2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부담금) 50%, 시군비 50% 원칙이나 시군 자체적 추가투입 / 국비는 별도 지원됨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등 도시계획시설 개량, 정비 및 확충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도시계획시설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582,500천원** 【기정액 : 5,582,500천원(도비), 경정액 : 37,500천원(도비), 5,545,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1,91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시계획시설사업 40건 (기정 35건, 추경 5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2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정비, 개량 및 확충 사업 시행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시계획시설 지원사업 : 11,910,000천원(도비 5,582,500, 시군비 6,327,500) · 천안시 : 총 5,985,000천원(도비 2,657,500, 시군비 3,327,500) · 보령시 : 총 1,050,000천원(도비 525,000, 시군비 525,000) · 아산시 : 총 1,455,000천원(도비 690,000, 시군비 765,000) · 서산시 : 총 600,000천원(도비 300,000, 시군비 300,000) · 계룡시 : 총 1,040,000천원(도비 520,000, 시군비 520,000) · 당진시 : 총 400,000천원(도비 200,000, 시군비 200,000) · 금산군 : 총 2,030,000천원(도비 515,000, 시군비 1,515,000) · 홍성군 : 총 300,000천원(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예산군 : 총 50,000천원(도비 25,000, 시군비 2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910,000		11,910,000	11,910,000	0		
국 비							
도 비	37,500		5,582,500	37,500	-5,545,000		
시군비	6,327,500		6,327,500	6,327,500	0		
부담금	5,545,000		0	5,545,000	5,545,000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원칙이나 시군 자체적 추가투입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928,400	9,928,4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계룡제일문 설치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및 국방수도의 상징물 설치
- 사업 위치 :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7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18.1. ~ 2020.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0,000천원** 【기정액 : 450,000천원(도비), 경정액 : 450,0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9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전통형 문루 설치(B=8m, L=35m, H=15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 사업 내용 : 전통형 문루 설치 1식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계룡제일문 설치 : 9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 공사비 : 900,000천원(도비 450,000 시군비 4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65,000	965,000	900,000	900,000	0		
국 비							
도 비	450,000	450,000	450,000	0	-450,000		
시군비	965,000	515,000	450,000	450,000	0		
부담금	450,000		0	450,000	45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부담금) 50%, 시군비 50%원칙이나 시군 자체적 추가투입 가능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년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의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여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및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 위치 : 아산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10.01. ~ 2020.12.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5,271천원**(균 125,271) 【성립전 : 112,000천원(국비), 3회추경분 : 13,271천원(국비)】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78,958천원
 ※ 증감 사유 :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국비지원 125,271천원 편성
- 사 업 량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장
- 사업 내용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 지원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 ②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 178,958(균 125,271 시군 53,687) 2019년 발행 지방채 이자 = 8,000백만원(융자금) * 12/12개월 * 2%(금리) = 160,000천원 2020년 발행 지방채 이자 = 13,000백만원(융자금) * 1/12개월 * 1.75%(금리) = 18,95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78,658		0	178,958	178,958		
국 비	125,271		0	125,271	125,271		균특
도 비							
시군비	53,387		0	53,687	53,687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남재 (행) 2810	김용목 (행) 4603	이진호 (행) 281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 (성립전)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 사업 위치 : (기존) 공주, 부여, 태안, (추가) 계룡, 금산
- 사업 기간 : 2020. 8.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900,000천원**(국 3,000,000 도 900,000) 【성립전 : 1,200,000천원(국비), 3회추경분 : 360,000천원(도비)】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6,00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년 추경 국토부 공모선정결과에 따른 국비 1,200백만원(성립전), 도비 360백만원 증액
- 사 업 량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2개소(계룡시, 금산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금산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지원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 : 6,000,000천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x 3(공주, 부여, 태안) = 3,600,000천원(기존)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x 2(계룡·금산) = 2,400,000천원(성립전) ※ 1개소 사업비 : 1,200,000천원(국 600,000, 도 180,000, 시군 4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0		3,600,000	6,000,000	2,400,000		
국 비	1,200,000		1,800,000	3,000,000	1,200,000		국고
도 비	360,000		540,000	900,000	360,000		
시군비	840,000		1,260,000	2,100,000	8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60,000	1,5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이혜원 (행) 2814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에너지·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솔루션을 활용해 실제 도시문제 해결
- 사업 위치 : 서산시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국 300,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60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년 추경 국토부 공모선정('20년 7월)에 따른 국비 300,000천원 증액
- 사 업 량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구축 1식
- 사업시행방법 : 서산시 실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장
- 사업 내용 : 드론을 이용한 가로림만 긴급물품배송, 실종사고 대처
 - 1) 섬 지역 주민들 긴급물품(마스크, 생필품) 배송 솔루션
 - 2) 가로림만 주변 실종, 연안사고 방지 및 신속대터 솔루션
 - 3) 가로림만 촬영자료 DB구축을 통한 생태계 보전 솔루션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2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 600,000천원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구축 x 1(서산) 600,000천원 (국 300,000, 시 3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0	600,000	600,000		
국 비	300,000		0	300,000	30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300,000		0	300,000	30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황한선 (행) 4630

건축도시과

건축도시과

1. 건축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46
2.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48
3. 2020 충남 건축디자인 페스티벌	50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2
5.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54
6.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	56
7. 주거급여사업	58
8. 빈집 「함께 써유」 사업	60
9.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62
10. 도시재생사업	64
11.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66
1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 재생사업)	68
13. '19년 총괄, 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70

건축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세부사업	주택 및 지역 개발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미나 개최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및 현장체험 등 역량강화 사업 취소
- 사 업 량 : 도 건축 및 디자인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10회(연 400명) , 연찬회 2회(연 1,000명), 현장체험 및 견학 2회(연 2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도 건축직 공무원 업무연찬과 시·군과 정부정책 공유 및 역량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특강, 도 건축공무원 역량강화 학습
- 지원 근거 : 건축기본법 제4조, 건축행정 운영지침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축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18,000	0	-18,000		
국 비							
도 비	0		18,000	0	-1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7,999	1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 2820	노윤철 (행) 4641	백상엽 (행) 465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정책사업	건축문화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진흥
	세부사업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4,666천원(국 26,666, 도 8,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79,998천원
 - ※ 증감 사유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소유자의 신청률 저조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화재취약건축물 2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건축물 관리법 제27조 및 제29조[시행 2020.5.1.][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 79,998천원(국 26,666, 도 8,000, 시군 18,666, 자부담 26,666) ○ 화재취약건축물 2동 보강 : 79,998천원 · 39,999천원(국 13,333, 도 4,000, 시군 9,333, 자부담 13,333)x2동 = 79,99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9,998		1,120,000	79,998	-1,040,002		
국 비	26,666		400,000	26,666	-373,334		
도 비	8,000		120,000	8,000	-112,000		
시군비	18,666		200,000	18,666	-181,334		
기 타	26,666		400,000	26,666	-373,334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3%, 도비 10%, 시군비 23%, 기타 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윤영산 (행) 2820	안유환 (행) 4642	박노성 (행) 4656

2020 충남건축디자인 페스티벌	정책사업	건축문화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진흥
	세부사업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기타보상금(301-12)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누구나 참여,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공존, 내포신도시 대표축제 발굴
- 사업 위치 :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충남도서관 일원(잔디광장, 문예회관, 도청로비 등)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5,000천원(도 75,0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문화행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매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를 내포신도시 지역 문화축제로 확대·개최(개막식, 어린이 그리기 대회, 학생공모전, 건축기행, 체험활동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12조제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23조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공모전·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3조(전시회의 개최)

-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0 충남건축디자인 페스티벌 : 75,000천원 ○ 사무관리비 : 25,0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및 매체홍보 = 15,000천원 · 건축, 디자인 공모 심사수당 = 10,000천원 ○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 어린이·초등생 충남도청·충남도서관 그리기 대회 = 3,000천원 · 건축, 디자인 대학생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등) = 12,000천원 · 전문가 초대전 (교수, 건축사, 디자이너, 교육청 학교설계, 연합설계 등) = 5,000천원 ○ 기타보상금 : 30,000천원 · 충남도청·충남도서관 그리기 대회 시상금(어린이·초등생) = 2,000천원 · 충남건축문화대전 시상금(건축 관련학과 대학생) = 14,000천원 · 충남공공디자인전 시상금(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생) = 1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5,000		280,000	75,000	-205,000		
국 비							
도 비	75,000		280,000	75,000	-20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0,000	220,000	-	100%	-	시군비 60,000 포함

* 2019년까지는 시군 순회개최하여 시군비가 포함되었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윤영산 (행) 2820	안유환 (행) 4642	안동수 (행) 28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	건축문화진흥
	단위사업	건축문화진흥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노후화로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2.~2021.1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2,688,731천원(국 20,103,944, 도 2,584,787)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8,719,924천원
 - ※ 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업 량 : 총 82동,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및 쾌적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군
- 사업 내용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보건소(지소), 시군 의료원, 어린이집의 단열·창호 보강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1식
- 지원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총 82동) : 28,719,924천원(국 20,103,944, 도 2,584,787, 시군 6,031,193) ○ 천안시(12동) : 4,959,848천원(국 3,471,893, 도 446,387, 시 1,041,569) ○ 공주시(10동) : 3,727,289천원(국 2,609,103, 도 335,456, 시 782,730) ○ 보령시(6동) : 2,043,904천원(국 1,430,733, 도 183,951, 시 429,220) ○ 아산시(17동) : 3,976,765천원(국 2,783,735, 도 357,905, 시 835,125) ○ 서산시(6동) : 1,356,333천원(국 949,433, 도 122,070, 시 284,830) ○ 논산시(3동) : 939,077천원(국 657,353, 도 84,517, 시 197,207) ○ 당진시(4동) : 2,920,194천원(국 2,044,136, 도 262,817, 시 613,241) ○ 금산군(4동) : 608,153천원(국 425,707, 도 54,733, 군 127,713) ○ 부여군(5동) : 1,108,267천원(국 775,787, 도 99,744, 군 232,736) ○ 서천군(7동) : 2,787,705천원(국 1,951,393, 도 250,894, 군 585,419) ○ 청양군(3동) : 2,735,769천원(국 1,915,038, 도 246,219, 군 574,512) ○ 홍성군(4동) : 628,497천원(국 439,947, 도 56,563, 군 131,987) ○ 태안군(1동) : 928,123천원(국 649,686, 도 83,531, 군 194,90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8,719,924			28,719,924	28,719,924		신규
국 비	20,103,944			20,103,944	20,103,944		
도 비	2,584,787			2,584,787	2,584,787		
시군비	6,031,193			6,031,193	6,031,193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윤영산 (행) 2820	안유환 (행) 4642	박노성 (행) 4656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정책사업	공공디자인 선진화
	단위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 개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공공디자인 협력 및 지원)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0천원(전액 감액)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60,000	0	-60,000		
국 비							
도 비	0		60,000	0	-6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00	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윤영산 (행) 2820	김선아 (행) 4643	김남희 (행) 2823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	정책사업	공공디자인 선진화
	단위사업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간판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광고 문화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옥외광고 산업 육성
- 사업 위치 : 2020 도민체전 예정지 / 충남옥외광고협회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미개최로 전액삭감
- 사 업 량 : 전시회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시행
- 사업 내용 : 충남 우수광고물 출품작 전시 및 우수상, 유공자 표창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 : 0천원(전액 감액)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47,500	0	-47,500		
국 비							
도 비	0		14,250	0	-14,250		
시군비	0		33,250	0	-33,25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	1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윤영산 (행) 2820	김선아 (행) 4643	김남희 (행) 2823

주거급여사업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	주거급여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중위소득 45%이하(4인 가구 213.7만원)인 가구에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1,844,416천원(국 47,243,313, 도 4,601,103)**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56,445,519천원
 - ※ 증감 사유 : 국비(국토부)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 사 업 량 : 47,211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임차 가구)기준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주택개보수 지원
- 지원 근거 : 주거급여법 제4조,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의2

주거급여법 제4조, 제19조

-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운영 및 관리주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규정하며, 특히 임대차 계약의 사실관계 및 주택 상태조사 등 급여 실시에 근간이 되는 주택조사를 시행토록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의2, 제7조, 제11조, 제4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 수급권 제도의 근거와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급여의 종류와 방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지원 틀을 규정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주거급여사업 : 56,445,519천원(국 47,243,313, 도 4,601,103, 시군 4,601,103) ○ 대상가구 : 47,211가구 추정(중위소득 45%이하) ○ 주거급여(현금) : 가구당 월 평균 (1인)158천원 ~ (4인)239천원 ○ 주택개보수(현물) :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 380만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6,445,519		57,728,243	56,445,519	-1,282,724		
국 비	47,243,313		48,193,313	47,243,313	-950,000		
도 비	4,601,103		4,767,465	4,601,103	-166,362		
시군비	4,601,103		4,767,465	4,601,103	-166,362		
기 타							

* 보조율 : 국비 84%, 도비 8%, 시군비 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6,856,788	46,856,788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5	정은주 (행) 4655

빈집 「함께 써유」 사업	정책사업	도시재생
	단위사업	도시재생
	세부사업	지역경관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시설설치를 통해 경관개선 및 주거환경개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3,000천원(도 63,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10,000천원
 - ※ 증감 사유 : 계룡시 사업 대상지 제외
- 사 업 량 : 빈집철거 14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시설설치비 1동당 최대 15백만원을 지원하여 경관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44조(보조 및 용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6조(사업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빈집 「함께 써유」 사업 : 210,000천원 ○ 빈집 1동당 15,000천원(도 4,500, 시군10,500)×14동 = 2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10,000		225,000	210,000	-15,000		
국 비							
도 비	63,000		67,500	63,000	-4,500		
시군비	147,000		157,500	147,000	-10,5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박상용 (행) 4644	이형기 (행) 2824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정책사업	도시재생
	단위사업	도시재생
	세부사업	지역경관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및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 및 귀촌자 등에게 무상 임대(4년) 제공으로 주거공간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4,000천원(도 84,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80,000천원
 - ※ 증감 사유 : 계룡시 사업 대상지 제외
- 사 업 량 : 빈집리모델링 14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도시 및 농촌지역 내 빈집 및 공가 리모델링비 1동당 최대 20백만원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촌자에게 무상임대(4년) 제공
- 지원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44조(보조 및 용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6조(사업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빈집 리모델링 : 280,000천원 ○ 빈집 리모델링 1동당 20,000천원(도 6,000, 시군 14,000)×14동 = 2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80,000		300,000	280,000	-20,000		
국 비							
도 비	84,000		90,000	84,000	-6,000		
시군비	196,000		210,000	196,000	-14,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박상용 (행) 4644	이형기 (행) 282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27,803,400	66,600,000	63,542,000	68,625,000	5,083,000	192,578,400	
국 비	196,682,000	39,960,000	38,125,000	41,175,000	3,050,000	115,547,000	
도 비	39,336,400	7,992,000	7,625,000	8,235,000	610,000	23,109,400	
시군비	91,785,000	18,648,000	17,792,000	19,215,000	1,423,000	53,922,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274,400	31,274,4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박상용 (행) 4644	윤병상 (행) 4660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정책사업	도시재생
	단위사업	도시재생
	세부사업	우리동네살리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주거 복지, 도시경쟁력 확보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시
- 사업 위치 : 보령시(1), 홍성군(1), 예산군(1)
- 사업 기간 : 2018.~202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66,400천원(균 4,472,000, 도 894,4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7,620,300천원
 - ※ 증감 사유 : ’20. 8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도비 추가 편성
- 사 업 량 : 우리동네 살리기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
- 사업 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 3개소
- 지원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16.1.1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우리동네살리기(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 7,620,300천원(균 4,472,000, 도 894,400, 시군 2,253,900) ○ 보령시 : 1,417,000천원(균 750,000, 도 150,000, 시 517,000) ○ 홍성군 : 2,053,300천원(균 1,232,000, 도 246,400, 군 574,900) ○ 예산군 : 4,150,000천원(균 2,490,000, 도 498,000, 군 1,16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4,417,000	10,750,000	6,670,300	7,620,300	950,000	6,046,700	
국 비	13,000,000	6,450,000	3,902,000	4,472,000	570,000	2,078,000	균특
도 비	2,600,000	1,290,000	780,400	894,400	114,000	415,600	
시군비	8,817,000	3,010,000	1,987,900	2,253,900	266,000	3,553,1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40,000	5,04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박상용 (행) 4644	이명석 (행) 4662

소규모 재생사업	정책사업	도시재생
	단위사업	도시재생
	세부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소규모 재생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관련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시설사업, 공동체 형성 S/W 사업을 지원하여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강화
- 사업 위치 : 공주시(2개소), 보령시(1개소), 당진시(1개소), 서산시(1개소), 금산군(1개소), 예산군(1개소)
- 사업 기간 : 2020.~202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43,240천원(균 602,700, 도 240,54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405,400천원
 - ※ 증감 사유 : '20. 5월 신규 공모선정(6개 사업) 및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국도비 추가 편성
 - ※ 재원변경 사유 : 도비 240,540천원 중 100,000천원은 기존 공주시 1개소의 국비분, '19년 말 '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급되어 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
- 사업 량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
- 사업 내용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7개소 추진
- 지원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16.1.1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규모재생사업 : 1,405,400천원(균 602,700, 도 240,540, 시군 562,160) ○ 지원시군 : 공주시(2개소), 보령시(1개소), 당진시(1개소), 서산시(1개소), 금산군(1개소), 예산군(1개소) ○ 7개소 국비 : 602,700천원 ○ 7개소 도비 : 240,540천원 ○ 7개소 시군비 : 562,160천원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898,400	1,493,000	200,000	1,405,400	1,205,400		
국 비	1,369,200	766,500	100,000	602,700	502,700		균특
도 비	285,540	45,000	20,000	240,540	220,540		
시군비	1,243,660	681,500	80,000	562,160	482,16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64,912	564,912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1)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윤영산 (행) 2820	박상용 (행) 4644	이명석 (행) 4662

‘19년 총괄, 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반환금기타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19년 총괄, 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19.7.~2020.4.(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798천원(도 4,798)**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사 업 량 : 총괄·공공건축가운영 및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총괄·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건축·도시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반납금(집행잔액 및 이자) : 4,798천원 ○ 집행잔액 : 80,000천원 - 75,486천원 = 4,514천원 ○ 발생이자 : 284천원 · 교부년도 : 2019년(국고보조금 80,000천원) · 발생년도 : 2019 ~ 2020년 · 예금이율 : 2019년(0.6%), 2020년(0.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798		0	4,798	4,798		신규
국 비							
도 비	4,798		0	4,798	4,798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윤영산 (행) 2820	박 신 (행) 4646	신주열 (행) 2826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1.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연계 지원(성립전) ...	76
2.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78
3.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80
4.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82
5.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86
6. 저상버스 도입 지원	88
7.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90
8.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	92
9. 법인택시 근무여건개선(코로나19 대응)	94
10. 택시 감차보상 지원(성립전)	96
11.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농림부)	98
12.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국토부)	100
13.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102
14.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104
15.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106
16. 택시운수종사자 국내연수	108
17. 자동차동원 대장 및 교통시행계획 작성 등	110
18. 안전속도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성립전)	112
19. 광역BIS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4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연계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내버스 교통비 할인 지원을 통한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 사업 위치 : 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645천원(국 7,645)** [(성립전) 7,364천원 / (3회추경분) 281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5,290천원
 - ※ 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주관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액 반영
- 사 업 량 : 천안시, 아산시 운행 시내·농어촌버스 카드결제 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 사업 내용 : 광역알뜰교통카드 결제건수에 따른 교통비 할인금 보전
- 지원 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령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15,290천원(국 7,645, 시군 7,645)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1,700명 * 8,994원 ≒ 15,29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290		0	15,290	15,290		신규
국 비	7,645		0	7,645	7,645		국고
도 비							
시군비	7,645		0	7,645	7,645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벽지노선 운행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내 시내·농어촌버스 취약지역 벽지노선 지원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운행 벽지노선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59,620천원(국 1,093,900, 도 765,72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646,300천원
 - ※ 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주관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액 반영
- 사 업 량 : 14개 시·군 운행 시내·농어촌버스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행정리 교통 취약지역 버스운행에 따른 운행손실금 보전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 3,646,300(국 1,093,900, 도 765,720, 시군 1,786,680) ○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 벽지노선 269개 * 평균 원가 13,555천원 ≙ 3,646,3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646,300		4,665,000	3,646,300	-1,018,700		신규
국 비	1,093,900		1,060,000	1,093,900	33,900		국고
도 비	765,720		1,272,000	765,720	-506,280		
시군비	1,786,680		2,333,000	1,786,680	-546,320		
기 타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 10,400,000천원(국 3,120,000, 시군 7,280,000) ○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부대시설비, 기타관리비 등 · 아산시 공영차고지 설치비 : 5,300,000천원 · 보령시 공영차고지 설치비 : 800,000천원 · 서천군 공영차고지 설치비 : 2,000,000천원 · 청양군 공영차고지 설치비 : 2,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3,648,000		31,729,000	10,400,000	-21,329,000	33,248,000	신규
국 비	13,094,400		9,518,700	3,120,000	-6,398,700	9,974,400	국고
도 비							
시군비	30,553,600		22,210,300	7,280,000	-14,930,300	23,273,6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대중교통이용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전산개발비(207-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시내· 농어촌버스) 이용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506,700천원(기 8,832,000, 도 674,7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8,576,950천원
 - ※ 증감 사유 : 당초 충남 대중교통 요금체계 영향분석 용역에 기초하여 비용을 산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량이 감소하였으며,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용역 시 낙찰차액 발생
- 사 업 량 : 298천명(충남거주 75세이상 도민 190, 등록장애인 92, 국가유공자 및 유족 16)
- 사업시행방법 : 도 및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75세 이상 도민 등의 대중교통(시내· 농어촌버스) 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금 지원
 -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보강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의 시·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18,140,500천원(기 8,832,000, 도 238,250, 시군 9,070,250) ○ 산출기초 - (75세 이상 노인) < 시내버스 > · (9, 10, 11월분) 1,500원 × 708,281회 × 3월 = 3,187,265천원 · (12월분) 1,500원 × 708,281회 × 1월 × 0.66 = 701,198천원 < 농어촌버스 > · (9, 10, 11월분) 1,400원 × 312,604회 × 3월 = 1,312,937천원 · (12월분) 1,400원 × 312,604회 × 1월 × 0.66 = 288,846천원 - (장애인) < 시내버스 > · (9, 10, 11월분) 1,500원 × 124,151회 × 3월 = 558,679,500원 · (12월분) 1,500원 × 124,151회 × 1월 × 0.66 = 122,909,490원 < 농어촌버스 > · (9, 10, 11월분) 1,400원 × 37,959회 × 3월 = 159,427,800원 · (12월분) 1,400원 × 37,959회 × 1월 × 0.66 = 35,074,116원 - (국가유공자) < 시내버스 > · (9, 10, 11월분) 1,500원 × 8,817회 × 3월 = 39,676,500원 · (12월분) 1,500원 × 8,817회 × 1월 × 0.66 = 8,728,830원 < 농어촌버스 > · (9, 10, 11월분) 1,400원 × 2,175회 × 3월 = 9,135,000원 · (12월분) 1,400원 × 2,175회 × 1월 × 0.66 = 2,009,700원 - (국가유공자 유족) < 시내버스 > · (9, 10, 11월분) 1,050원 × 1,612회 × 3월 = 5,077,800원 · (12월분) 1,050원 × 1,612회 × 1월 × 0.66 = 1,117,116원 < 농어촌버스 > · (9, 10, 11월분) 980원 × 603회 × 3월 = 1,772,820원 · (12월분) 980원 × 603회 × 1월 × 0.66 = 390,020원 ■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기능보강 □ 전산개발비(207-02) : 436,450천원(도 436,450) ○ 주요내용 :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추가 개발 ○ 산출기초 : 436,450천원×교통카드 시스템 추가구축(카드 권종 1종 → 6종) 1식 = 436,450천원 ⇒ 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63,550천원 반영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576,950		29,500,000	18,576,950	-10,923,050		
국 비	8,832,000		8,832,000	8,832,000	-		복권기금
도 비	674,700		6,168,000	674,700	-5,493,300		
시군비	9,070,250		14,500,000	9,070,250	-5,429,750		
기 타							

* 보조율 : 국비 47.5%, 도비 3.6%, 시군비 48.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804	3,804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7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종인 (행) 2840	최기호 (행) 4561	김은총 (행) 4564

[illegible]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경영수지분석 기준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기준 마련
- 사업 위치 : 도내 시외버스 운송업체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90,181천원(도 90,181)**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90,181천원
 - ※ 증감 사유 : 계약후 잔액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감하고자 함
- 사업량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시외버스 운수업체에서 입력한 회계자료를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현지실사 등 자료의 검증을 통해 업체별·노선별 손익분석, 표준원가 산정과 버스 경영수지 및 손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재정지원금의 배분기준과 지원근거 마련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 90,181천원(도 90,181) ○ 연구원 등 인건비 : 62,244천원 · 책임연구원 : 11,627천원 · 연구원 : 14,859천원 · 연구보조원 : 35,758천원 ○ 전산처리비, 여비 등 경비 : 27,93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181		100,000	90,181	-9,819		
국 비							
도 비	90,181		100,000	90,181	-9,819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0,000	98,800	12,200	9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19.9월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정 문 수 (행) 4577	전 선 희 (행) 2842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저상버스 도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86,092천원(국 586,092)**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172,184천원
 - ※ 증감 사유 : 국비 교부대수 조정(19대→13대 : 천안시 6대 감)
- 사 업 량 : 13대 (천안시 2대, 아산시 6대, 서산시 2대, 당진시 3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 지원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저상버스의 구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1,172,184천원(국 586,092, 시군 586,092) ○ 13대 × 90,168천원(대당 보조금) = 1,172,18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72,184		1,713,192	1,172,184	-541,008	0	
국 비	586,092		856,596	586,092	-270,504		국고
도 비							
시군비	586,092		856,596	586,092	-270,504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35,062	1,235,062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정 문 수 (행) 4577	전 선 희 (행) 2842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택시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택시 운임·요율의 결정 및 조정 여부 검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107,800천원(도 107,8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7,800천원
 - ※ 증감 사유 : 계약 후 잔액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감하고자 함
- 사업량 : 택시 운임·요율 분석 연구용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하여 적정 운임·요율안 제시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절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0년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 107,800천원(도 107,800) ○ 연구원 등 인건비 : 88,519천원 · 책임연구원 : 31,005천원 · 연구원 : 35,662천원 · 연구보조원 : 21,852천원 ○ 전산처리비, 여비, 수수료 등 : 19,28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7,800		110,000	107,800	-2,200		
국 비							
도 비	107,800		110,000	107,800	-2,2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정 문 수 (행) 4577	김 단 비 (행) 4568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 장비 교체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택시 콜센터의 정보화를 통해 택시 서비스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7,083천원(도 87,083)**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90,277천원
 - ※ 증감 사유 : 천안시 사업 기추진으로 인해 당초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 사 업 량 : 11개 시·군의 콜센터(천안, 서천, 청양, 계룡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군
- 사업 내용 : 브랜드택시 콜센터의 노후된 장비 교체 / 1개 콜센터 당 약 26,390천원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 장비 교체 : 290,277천원(도 87,083, 시군 203,194) ○ 1개 콜센터 당 약 26,390천원 - PC : 1,200천원×4 = 4,800천원 - 콜 센터서버 : 8,900천원×2 = 17,800천원 - UPS : 1,800천원 - 키 폰 주장치 : 790천원 - 키 폰 전화기 : 100천원 × 4대 = 400천원 - 서버 랙 : 800천원 ○ 약 26,390천원 × 11개 콜센터 ≒ 290,27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90,277		316,680	290,277	-26,403		
국 비							
도 비	87,083		95,000	87,083	-7,917		
시군비	203,194		221,680	203,194	-18,486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정 문 수 (행) 4577	김 단 비 (행) 4568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유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1,492,500천원(부 1,492,5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985,000천원
 - ※ 증감 사유 : 운수종사자 지원 완료에 따라 사업 유보액을 감하고자 함
- 사업량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985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법인택시 운전원 생계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 2,985,000천원(부 1,492,500, 시군 1,492,500) ○ 1,000천원(원가)×2,985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수) = 2,98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985,000		3,000,000	2,985,000	-15,000		
국 비							
도 비							
시군비	1,492,500		1,500,000	1,492,500	-7,500		
기 타	1,492,500		1,500,000	1,492,500	-7,5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정 문 수 (행) 4577	김 단 비 (행) 4568

택시 감차보상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감차보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업구역별 적정대수를 초과한 택시 면허를 감차하여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공급 해소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308,100천원(국 308,1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27,000천원
 - ※ 증감 사유 : 청양군 사업량 1대 증가로 인한 1대분(3,900천원) 국비 증가
- 사업량 : 79대(공주시 12대, 보령시 8대, 논산시 24대, 금산군 10대, 부여군 22대, 청양군 3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 사업 내용 :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 대당 3,900천원(국비 기준)
- 지원 근거 : 택시발전법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택시 감차보상 지원 : 1,027,000천원(국 308,100, 시군 718,900) ○ 79대 × 13,000천원(대당 지원 단가) = 1,02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27,000		1,014,000	1,027,000	13,000		
국 비	308,100		304,200	308,100	3,900		국고
도 비							
시군비	718,900		709,800	718,900	9,1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300	202,800	97,500	67.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정 문 수 (행) 4577	김 단 비 (행) 4568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농림부)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향상
- 사업 위치 : 7개 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2,030,000천원(균 2,030,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4,060,000천원
 - ※ 증감 사유 : 농림부 2020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 조정 결과에 따른 사업비 감액
(예산군 국비 170백만원, 태안군 국비 150백만원 감액)
- 사업량 : 7개 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버스) 제공
- 지원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5조의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7.2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 4,060,000천원(균 2,030,000, 균 2,030,000) ○ 금산 600,000천원, 부여 600,000천원, 서천 1,100,000천원, 청양 600,000천원, 홍성 600,000천원, 예산 260,000천원, 태안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60,000		4,700,000	4,060,000	-640,000		
국 비	2,030,000		2,350,000	2,030,000	-32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2,030,000		2,350,000	2,030,000	-32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350,000	2,3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종인 (행) 2840	최기호 (행) 4561	김은총 (행) 4564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국토부)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공공형버스지원(지역자율)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 3,100,000천원(균 1,550,000, 시 1,550,000) ○ 천안 1,100,000천원, 공주, 600,000천원, 아산 200,000천원, 논산 600,000천원, 당진 6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100,000		4,000,000	3,100,000	-900,000		
국 비	1,550,000		2,000,000	1,550,000	-45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1,550,000		2,000,000	1,550,000	-45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0	2,0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종인 (행) 2840	최기호 (행) 4561	김은총 (행) 4564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통 계 목	민간자본보조 (4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외버스차량에 첨단안전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 위치 :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80,000천원(국 40,000, 도 40,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80,000천원
 - ※ 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63대→32대)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업량 :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 32대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시외버스 운송업체(금남고속 등 5개 업체)
- 사업 내용 : 차량 만료 또는 조기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는
시외버스 차량에 장착비용 보조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사업용 차량 줄임운전 방지대책('17. 7월,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사업 : 80,000천원(국 40,000, 도 40,000) ○ 2,500천원(단가) × 32대 = 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157,500	80,000	-77,500		
국 비	40,000		78,750	40,000	-38,750		국고
도 비	40,000		78,750	40,000	-38,7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0,000	159,100	900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최종인 (행) 2840	김홍근 (행) 4566	이재용 (행) 2844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업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60,300천원(국 60,3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50,750천원
 - ※ 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603대→302대)에 따른 예산 감액
- 사 업 량 : '20~'21.6월 기간 동안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302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대당 최대 50만원)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제2항, 동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150,750천원(국 60,300, 시군 60,300, 자부담 30,150) ○ 대당 최대 500천원 × 302대 ≒ 150,7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750		301,500	150,750	-150,750		
국 비	60,300		120,600	60,300	-60,300		국고
도 비							
시군비	60,300		120,600	60,300	-60,300		
기 타	30,150		60,300	30,150	-30,150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76,000	776,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최종인 (행) 2840	김홍근 (행) 4566	이재용 (행) 2844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사업 위 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632,000천원(국 2,632,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632,000천원
 - ※ 증감 사유 : 국가 제4회 추경 대상에 포함하여 국비 지원
- 사 업 량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63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법인택시 운전원 고용·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 2,632,000천원(국 2,632,000) ○ 1,000천원(원가)×2,632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수) = 2,63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632,000		0	2,632,000	2,632,000		신규
국 비	2,632,000		0	2,632,000	2,632,0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 종 인 (행) 2840	정 문 수 (행) 4577	김 단 비 (행) 4568

택시운수종사자 국내연수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연수원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기진작 및 교통 문화 선진화에 기여함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취소
- 사 업 량 : 국내교육연수 연 2회
- 사업시행방법 : 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사업 내용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국내교육연수 실시
-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① 특별사·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사·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택시운수종사자 국내연수 (전액 감액) ○ 국내연수 2회 * 0천원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40,000	0	-40,000		
국 비							
도 비	0		40,000	0	-4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000	4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2020. 9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최종인 (행) 2840	최기호 (행) 4561	정재진 (행) 4562

자동차동원 대장 및 교통시행계획 작성 등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교통안전관리 사업
	세부사업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전시 차량동원 임무 수행 및 준비태세 확립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천원(도 4,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4,000천원
 - ※ 증감 사유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대장 미 제작에 따른 예산감액(시스템 대체) / 충무교통시행계획만 제작
- 사 업 량 : 충무교통시행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무교통시행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
- 지원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9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9조(시행계획)

- ① 시·도지사와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동차 동원대장 및 충남도 교통시행계획 작성 : 4,000천원(도 4,000) ○ 충무교통시행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 : 200부 × 20천원 = 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00		9,000	4,000	-5,000		
국 비							
도 비	4,000		9,000	4,000	-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6,686	2,314	7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최종인 (행) 2840	김홍근 (행) 4566	이재용 (행) 2844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세부사업	교통안전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으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추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2,800,000천원(특 2,800,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5,600,000천원
- ※ 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액 반영
- 사 업 량 :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시·군
- 사업 내용 : 도시부(시·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역지역)의 일반도로 50km/h 속도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 4. 17. 전면 시행되는 도시부 50km/h 시행에 따라, 현재 60km/h로 되어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지, 교통신호기 및 신호등·신호제어기 시스템 정비 등 도시부 속도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도모
- 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기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속도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 5,600,000(특 2,800,000, 시군 2,800,000)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지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600,000		0	5,600,000	5,600,000		신규
국 비	2,800,000		0	2,800,000	2,800,000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2,800,000		0	2,800,000	2,80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이승철 (행) 4571	고희주 (행) 4572

광역BIS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보전지출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역BIS 지원사업(천안, 당진)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18.1.1. ~ 2019.12.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1,063천원(도 1,063)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63천원
 - ※ 증감 사유 : 반납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 계상
- 사 업 량 : 반납이자 분 2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광역BIS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BIS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1,062,270원 ○ 광역BIS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 1,062,270원 · (천안시) $86,000\text{천원} \times 37\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율}(0.7\%) + 61\text{천원} \times 909\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율}(0.7\%) = 62,080\text{원}$ · (당진시) $112,000\text{천원} \times 82\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율}(0.7\%) + 224,021\text{천원} \times 190\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율}(0.7\%) + 992\text{천원} \times 408\text{일} / 365 \times \text{예금율}(0.7\%) : 1,000,190\text{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63		0	1,063	1,063		
국 비							
도 비	1,063		0	1,063	1,063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김재식 (행) 4567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철도항공과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122
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보상비)	124
3.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126
4.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보상비)	128
5.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보상비)	130
6.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워크숍	132
7. 행복도시권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연구용역 ..	134
8. 송악지구 한진~복운 리도211호 확포장	136
9. 인주지구 해암~관암 리도209호 확포장	138
10. 농어촌도로 확포장	140
11. 의당면 면도102호(요룡도로) 확포장공사(도민참여)	144
12. 솔피성지 버그네 순례길 인도설치공사(도민참여)	146
13. 국지도96호(태안, 서산) 포장도 보수	148

14.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50
15. 지방도617호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152
16. 서원교 재가설공사	154
17. 국지도68호 황산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성립전)	156
18.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성립전)	158
19.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자본보조)(성립전)	160
20.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162
21.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	164
22.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	166
23.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	168
24.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	170
25. 무창포IC~응천(지방도606호) 확포장	172
26.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	174
27.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	176
28.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	178
29.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180

[illegible]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예방 및 신양IC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청양군과 세종시·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사업 위치 :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국지도70호)
- 사업 기간 : 2017.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375,000천원(도 649,000천원, 부 3,726,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4,375,000천원
 - ※ 증감 사유 : 수용재결 공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지구간 조정
 - 당진~서산(공사비) → 청양~신양IC(보상비)
- 사 업 량 : 2차로 확장 L=16.2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선/청양~신양IC) 건설 [연장 16.2km,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 4,375,000천원 ○ 보상비 : 4,3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119,000	6,744,000	3,726,000	4,375,000	649,000		계속
국 비							
도 비	7,393,000	6,744,000	0	649,000	649,000		
시군비							
기 타	3,726,000		3,726,000	3,726,000	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748,666	3,748,302	364	99%	36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4673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보상비)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간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 판교리(국지도96호)
- 사업 기간 : 2016.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73,000천원(도비 773,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773,000천원
 - ※ 증감 사유 : 수용재결 공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지구간 조정
 - 당진~서산(공사비) → 이호~양곡(보상비)
- 사 업 량 : 2차로 L=4.845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96호선/이호~양곡) 건설 [연장 4.845, 폭 2차로(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보상비) : 773,000천원 ○ 보상비 : 77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773,000	5,000,000	697,000	773,000	76,000		계속
국 비							
도 비	5,773,000	5,000,000	697,000	773,000	76,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84,643	3,284,422	100,221	97%	100,22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70호선 내 성연~운산과 합덕~우강 미연계에 따른 교통 불편 조기 해소
- 사업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9.~2027.(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121,300천원(국비 4,792,000천원, 도비 1,329,3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3,171,300천원(공사비 6,121,300천원, 보상비 27,050,000천원)
 - ※ 증감 사유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지구간 조정에 따른 감액
 - 당진~서산(공사비) → 청양~신양IC(보상비), 이호~양곡(보상비)
- 사업 량 : 4차로 확장 L=19.1km, B=17.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당진~서산) 건설 [연장 19.1km, 폭 4차로(1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 33,171,300천원 ○ 시설비 : 5,692,000천원 ○ 감리비 : 415,000천원 ○ 부대비 : 14,300천원 ○ 보상비 : 27,0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75,500,000	59,920,430	31,074,300	33,171,300	2,097,000	82,408,270	계속
국 비	78,000,900	19,921,000	4,792,000	4,792,000	0	53,287,900	균특
도 비	73,499,100	39,999,430	2,282,300	4,379,300	2,097,000	29,1203,70	보상비 (기정228,000천원, 변경 3,050,000천원)
시군비							
기 타	24,000,000		24,000,000	24,000,000	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공사비(국비70%, 도비30%) / 보상비(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733,270	47,622,792	8,110,478	85.40%	8,110,47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70호선 내 성연~운산과 합덕~우강 미연계에 따른 교통 불편 조기 해소
- 사업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9.~2027.(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050,000원(도비 3,050,000천원, 부담금 24,00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7,050,000천원
 - ※ 증감 사유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지구간 조정 및 공사추진을 위한 보상비 증액
 - 성환~입장(보상비), 밀두~대읍, 삭선~원북, 두마~노성, 무창포IC~웅천, 구룡~용두, 화성~장곡 → 당진~서산(보상비)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19.1km, B=17.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당진~서산) 건설 [연장 19.1km, 폭 4차로(1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보상비) : 27,050,000천원 ○ 보상비 : 27,050,000천원 - 도비 : 3,050,000천원 - 부담금 : 24,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2,582,000	35,532,000	24,228,000	27,050,000	2,822,000	20,000,000	계속
국 비							
도 비	58,582,000	35,532,000	228,000	3,050,000	2,822,000	20,000,000	
시군비							
기 타	24,000,000	0	24,000,000	24,000,000	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532,000	33,532,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보상비)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세부사업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보상비)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로 확포장 및 선형 불량구간 개량하여 국지도 70호 광역도로망 구축
- 사업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2028.(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0원
 - ※ 증감 사유 : 설계도서 이관(대전청→충남도) 지연으로 행정(보상)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10.3km, B=17.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70호/성환~입장) 건설 [연장 L=10.3km, 폭 4차로(1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사비(국비 70%, 지방비 30%). 보상비(지방비 1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보상비) : 전액감액 ○ 보상비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4,800,000		500,000	0	-500,000	34,800,000	계속
국 비							
도 비	34,800,000		500,000	0	-500,000	34,8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워크숍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도로교통업무 운영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의 도로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 ~ 2020.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0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취소
- 사 업 량 : 시·군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시·군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워크숍(전액 감액) ○ 행사운영비 1식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9,000	0	-9,000		
국 비							
도 비	0		9,000	0	-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	10,172	4,828	67.8%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행복도시권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연구용역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도로교통업무 운영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적기 구축을 통해 교류 및 상생발전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6. ~ 2021. 6.
- 예 산 액 : **64,125천원(도비 64,125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64,125천원
 - ※ 증감 사유 : 공동연구용역 낙찰차액 감액
- 사 업 량 : 세종~공주터미널BRT 등 3개 노선 53.7km
- 사업시행방법 : 국가시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 내용 :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 반영된 행복도시권 3개 광역BRT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용역을 수행을 통해 사업타당성 확보
- 지원 근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행복도시권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연구용역 : 64,125천원 ○ 전체 용역비 1,092,500천원 - 행복청 : 285,000천원 - 총 남 : 128,250천원(도 64,125, 공주시 64,125) - 총 북 : 114,115천원(도 72,057, 청주시 72,057) - 세 중 : 535,13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4,125		115,000	64,125	-50,875		
국 비							
도 비	64,125		115,000	64,125	-50,87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정성식 (행) 2831

송악지구 한진~복운 리도211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편익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 위치 :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부곡리 ~ 복운리)
- 사업 기간 : 2015. 1월 ~ 2020.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50,000천원** 【기정액 : 1,150,000천원(도비), 경정액 : 1,150,000천원(지역개발기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3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비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L=2.5km, B=8.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요구 사업,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송악지구 한진~복운 리도211호 확포장(2,300,000천원) ○ 공사비 : 1,700,000천원 ○ 보상비 : 6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900,000	9,600,000	2,300,000	2,300,000	0		
국 비							
도 비	4,800,000	4,800,000	1,150,000	0	-1,150,000		
시군비	5,950,000	4,800,000	1,150,000	1,150,000	0		
기 타	1,150,000		0	1,150,000	1,15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00	7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강성민 (행) 4675

인주지구 해암~관암 리도209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편익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 위치 :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5. 1월 ~ 2020.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25,000천원 【기정액 : 925,000천원(도비), 경정액 : 925,000천원(지역개발기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85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L=1.24km, B=8.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요구 사업,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주지구 해암~관암 리도209호 확포장(1,850,000천원) ○ 공사비 : 1,8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850,000	4,000,000	1,850,000	1,850,000	0		
국 비							
도 비	2,000,000	2,000,000	925,000	0	-925,000		
시군비	2,925,000	2,000,000	925,000	925,000	0		
기 타	925,000		0	925,000	925,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000	6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강성민 (행) 4675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편익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144,500천원** 【기정액 : 15,144,500천원(도비), 경정액 : 15,144,500천원(부담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0,289,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3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어촌도로 확포장 (30,289,000천원) <천안시> 4지구, 1,540,000천원 ○ 리도212호(송왕선) 확포장공사(800,000천원) ○ 대해교 진출입로 확포장공사(100,000천원) ○ 시도11호(광덕사~시계)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리도20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140,000천원) <공주시> 5지구, 4,200,000천원 ○ 복합연수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000,000천원) ○ 시도12호(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공사(1,000,000천원) ○ 상왕도로(시도5호)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시도38호(산정~조평)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선학리 진입교량 개선사업(200,000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보령시> 8지구, 2,549,000천원 ○ 천북 시도10호(하만~신죽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000,000천원) ○ 남포면 리도201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00,000천원) ○ 남포면 리도202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00,000천원) ○ 청소206호(진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청소209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진죽3리(농어촌도로201호) 확포장공사(29,000천원) ○ 봉덕리 농도(207호) 진입로 개선공사(120,000천원) ○ 주산면 동오리 데크시설 설치공사(200,000천원) <아산시> 6지구, 3,360,000천원 ○ 농어촌도로(가내~궁화)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농어촌도로209호(구령리) 확포장공사(800,000천원) ○ 시도11호(남성리)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농어촌도로(기곡~신통)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시도3호(유원대학교 일원) 보도설치공사(400,000천원) ○ 휴대1리 농어촌도로102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60,000천원) <서산시> 2지구, 1,000,000천원 ○ 농어촌도로 노면포장공사(500,000천원) ○ 차성선(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500,000천원) <논산시> 5지구, 3,600,000천원 ○ 채운 리도206호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양촌 리도212호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연무 리도203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시도2호(신교~외성) 확포장공사(1,100,000천원) ○ 시도7호(탐정~종연) 교량 설치공사(500,000천원) <당진시> 1지구, 200,000천원 ○ 대호지305호(조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00,000천원) <금산군> 1지구, 200,000천원 ○ 군도7호 지방교 재가설공사(200,000천원) <부여군> 5지구, 2,340,000천원 ○ 군도4호선(안서~가덕) 도로확포장공사(400,000천원) ○ 군도2호선(전장~화성) 도로확포장공사(500,000천원) ○ 농어촌도로204호 교량재가설(600,000천원) ○ 군도14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340,000천원) ○ 임천면 리도2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500,000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서천군> 6지구, 1,720,000천원 ○ 군도4호선 내 보도설치공사(120,000천원) ○ 기산 농어촌도로 203호(기산 월기)도로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군도6호선(신포~하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300,000천원) ○ 시초 농어촌도로304호(신곡~태성) 도로 확포장공사(100,000천원) ○ 종천 리도207호 확포장공사(400,000천원) ○ 종천 리도204호 확포장공사(200,000천원) <청양군> 4지구, 2,300,000천원 ○ 농어촌도로204호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농어촌도로102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군도11호 계양교 보수·보강공사(200,000천원) ○ 장평면 죽림교량 재가설공사(1,000,000천원) <홍성군> 3지구, 1,330,000천원 ○ 서부 농어촌도로209호 확포장공사(700,000천원) ○ 국지도96호 보도 및 배수로 설치공사(600,000천원) ○ 홍동 상하금 아스콘 포장(60,000천원) <예산군> 11지구, 5,700,000천원 ○ 삼교 때말교(군도7호) 재가설공사(700,000천원) ○ 수촌~목리간(삼교325호) 확포장공사(800,000천원) ○ 예림~용궁간(신암203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오추~오추간(고덕202호) 확포장공사(400,000천원) ○ 고도~구암간(봉산301호) 확포장공사(200,000천원) ○ 상성~역리간(삼교304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상하~고덕간(삼교319호) 확포장공사(500,000천원) ○ 차동~차동간(신양305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화천~이티간(대술301호) 확포장공사(400,000천원) ○ 신양~하천간(신양202호) 확포장공사(600,000천원) ○ 구만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300,000천원) <태안군> 2지구, 250,000천원 ○ 고남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50,000천원) ○ 소원311호(중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289,000		30,289,000	30,289,000	0		
국 비							
도 비			15,144,500	0	-15,144,500		
시군비	15,144,500		15,144,500	15,144,500	0		
기 타	15,144,500		0	15,144,500	15,144,5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910,500	18,910,5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강성민 (행) 4675

의당면 면도102호(요룡도로) 확포장공사(도민참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 두만리로 가는 농어촌102호선으로 현재의 도로가 협소하고 곡선이 심하여 교통사고 위험 산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 두만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 【기정액 : 150,000천원(도비), 경정액 : 150,000천원(지역개발기금)】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공사 L=390m, B=8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의당면 면도102호(요룡도로) 확포장공사(도민참여) (300,000천원) ○ 공사비 - 380m x 1식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300,000	300,000	0		
국 비							
도 비			150,000	0	-150,000		
시군비	150,000		150,000	150,000	0		
기 타	150,000		0	150,000	15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9~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강성민 (행) 4675

솔피성지 버그네 순례길 인도설치공사(도민참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한국 카톨릭의 대표적 성지로서 교황방문 및 해마다 다수의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보행로가 한측만 설치되어 보행편의성 결여, 이에 보행로 확충 사업을 실시해 보행공간 확보와 솔피성지의 접근성 강화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비 19,500천원, 부담금 130,5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공사 L=390m, B=8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솔피성지 버그네 순례길 인도설치공사(도민참여) (300,000천원) ○ 공사비 － 인도설치 1,600㎡ × 187,500원/㎡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300,000	300,000	0		
국 비							
도 비	19,500		150,000	19,500	-130,500		
시군비	150,000		150,000	150,000	0		
기 타	130,500		0	130,500	130,5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강성민 (행) 4675

국지도96호(태안,서산) 포장도 보수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96호 태안, 서산 지역의 소성변형, 거북등 균열 등 불량한 구간 포장도 보수
- 사업 위치 :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근흥면 일원(국지도96호)
- 사업 기간 : 2020.1. ~ 2020.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00,000천원(도비 90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900,000천원
 - ※ 증감 사유 : 포장도 보수공사 낙찰차액 감액
- 사 업 량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L=10k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지도96호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L=10k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1항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지도96호(태안,서산) 포장도 보수(900,000천원)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L=10km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 10km × 900,000천원/km ≒ 9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		1,000,000	900,000	-100,000		
국 비							
도 비	900,000		1,000,000	900,000	-1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도로시설물 노후로 보수비용 및 사고발생 위험 증가와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19.1. ~ 2021.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80,000천원(도비 1,48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480,000천원
 - ※ 증감 사유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낙찰차액 감액
- 사 업 량 :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DB, 도로(포장, 기하구조) 및 구조물 조사·분석·평가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15조, 제31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1,480,000천원)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식 1,480,000천원 - DB 구축 (비탈면조사, 교량조사, 포장상태조사 등) 1식 = 1,375,102천원 - 시스템구축 1식 = 104,89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690,000	1,000,000	1,600,000	1,480,000	-120,000	210,000	
국 비							
도 비	2,690,000	1,000,000	1,600,000	1,480,000	-120,000	2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0	1,000,000	0%	1,000,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중원 (행) 4682

지방도617호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 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 사업 위치 :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 수성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12. ~ 2021. 12.(다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 【기정액 : 1,000,000천원(특교세), 경정액 : 1,000,000천원(도비)】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0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편성 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로 재원 변경
- 사 업 량 : 선형개량 L=1.282km, B=10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선형개량 및 고개 낮추기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및 제92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판교상좌 선형개량공사 : 2,000,000천원 ○ 공사비 : 2,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8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0	5,800,000	계속
국 비			1,000,000	0	-1,000,000		특교세
도 비	4,9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900,000	
시군비	4,9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2,90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1,00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10	김정흠 (행) 4681	하병열 (행) 2833

서원교 재가설공사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위험교량개량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상 교량에 대하여 내구성 안전성 저하로 인한 중대결함 예방으로 안전사고 방지
- 사업 위치 :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일원(지방도624호)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0,000천원(도비 100,000천원, 부담금 50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600,000천원
 -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비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 발행
- 사 업 량 : 교량 재가설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물 안전등급(E)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교량으로 판된되어 재가설추진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원교 재가설공사(600,000천원) ○ 시설비 · 교량 재가설 1개소 × 600,000천원 ≒ 6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00,000		600,000	600,000	0		
국 비							
도 비	100,000		600,000	100,000	-500,000		
시군비							
기 타	500,000		0	500,000	5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국지도68호 황산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위험교량개량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상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통하여 안전사고 방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국지도68호)
- 사업 기간 : 2021. 11. ~ 2022.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특교세 1,00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여 행안부에 특교세 신청
- 사 업 량 : 도내 지방도상 교량 내진성능 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보강 실시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15조, 제31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황산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1,000,000천원) - 받침교체 4000KN 4개 + 8000KN 40개 = 44개 = 800,000천원 - 교량인상 1식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0			1,000,000	1,000,000	600,000	신규
국 비	1,000,000			1,000,000	1,000,000		특교세
도 비	600,000					6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고(특교세)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30	김정흠 (행) 4681	이 원 (행) 4683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및 국지도 상 호우피해복구를 통한 재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79,822천원(국비 405,000천원, 특교세 1,474,822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879,822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호우피해(7.28~8.11)에 따른 복구 추진
- 사 업 량 :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2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26개소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지원(1,879,822천원) ○ 지방도 호우피해 26개소 복구 ※ 행정안전부 피해조사완료에 따른 금액산출 - 국비 405,000천원, 특교세 1,474,82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625,558		0	1,879,822	1,879,822	1,745,736	신규
국 비	3,625,558		0	1,879,822	1,879,822	1,745,736	국비, 특교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고(국비, 특교세)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30	김정흠 (행) 4681	하병열 (행) 2833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자본보조)(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방도 및 국지도 상 호우피해복구를 통한 재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 사업 기간 : 2020.10.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4,216천원(특교세 504,216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504,216원
 - ※ 증감 사유 : 2020년 호우피해(7.28~8.11)에 따른 복구 추진
- 사 업 량 : 국지도 호우피해복구(교량)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호우피해복구(교량 1개소)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지원(504,216천원) ○ 국지도 호우피해복구(율금교) ※ 행정안전부 피해조사완료에 따른 금액산출 - 특교세 504,21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13,510		0	504,216	504,216	1,409,294	신규
국 비	1,913,510		0	504,216	504,216	1,409,294	특교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고(특교세)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홍순광 (행) 2830	김정흠 (행) 4681	하병열 (행) 2833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서산~부석 (지방도649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서산시 예천동 ~ 부석면 대두리 지내
- 사업 기간 : 2010.1. ~ 2021.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2,686,000천원(도비 708,000천원, 부담금 21,978,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2,686,000천원
 - ※ 증감 사유 : 장기간(10년)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간접비 최소화 등을 위한 필요금액 계상
 - ※ 재원변경 사유 : 자치단체간 부담금(서산시→도) 편성에 따른 도비 재원 변경(도비561,000천원→부담금561,000천원)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8.4km, B=21.5m, 교량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공사 L=8.4km, B=21.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공사 (22,686,000천원) ○ 시설비 : 22,098,000천원 - 도비 : 120,000천원 - 지역개발기금 : 21,417,000천원 - 자치단체간 부담금 : 561,000천원 ○ 감리비 : 58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9,637,000	76,951,000	22,566,000	22,686,000	120,000		계속
국 비							
도 비	77,659,000	76,951,000	1,149,000	708,000	-441,000		
시군비							
기 타	21,978,000		21,417,000	21,978,000	561,000		지역개발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741,123	15,291,399	422,724	97.3%	422,72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09.4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기지사~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기지사~한진 (지방도619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사리 ~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 사업 기간 : 2017 ~ 2024(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5,000천원(도비 125,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25,000천원
 - ※ 증감 사유 : 실시설계용역 및 연계용역(교통영향평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 낙찰차액 감액
 - 기지사~한진 → 서산~부석으로 낙찰차액 지구간 조정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9.6km, B=18.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기지사 ~ 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공사 L=9.6km, B=18.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지사~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공사 (125,000천원) ○ 시설비 : 115,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43,171,000	3,398,000	245,000	125,000	-120,000	139,648,000	계속
국 비							
도 비	143,171,000	3,398,000	245,000	125,000	-120,000	139,64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47,817	830,305	417,512	66.5%	417,51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6.7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밀두~대음 (지방도623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지원대책 사업으로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 밀두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 ~ 2025(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0,000천원
 - ※ 증감 사유 : 실시설계용역 및 연계용역(교통영향평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 낙찰차액 감액
 - 밀두~대음 → 당진~서산(보상비)로 낙찰차액 지구간 조정
- 사업 량 : 4차로 확장 L=3.58km, B=18.7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도(623호) 확포장공사 (L=3.58km, B=18.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밀두~대음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30,000천원) ○ 시설비 : 2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2,600,000	805,000	310,000	30,000	-280,000	41,765,000	계속
국 비							
도 비	42,600,000	805,000	310,000	30,000	-280,000	41,76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55,000	426,278	228,722	65.1%	228,72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8.6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확포장
	세부사업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사업
	통 계 목	시설비 등 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 원북면 반계리(지방도603호)
- 사업 기간 : 2017 ~ 2025(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10,000천원(도비 10,000천원, 부담금 2,40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2,410,000천원
 - ※ 증감 사유 :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기간(약 6개월) 소요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구간 조정
- 삭선~원북 → 당진~서산(보상비)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3.98km, B=9.5m(2차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삭선~원북(지방도 603호선) 확·포장공사 L=3.98km, B=9.5m(2차로)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공사(2,410,000천원) ○ 시설비 : 2,40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6,514,000	2,050,000	2,510,000	2,410,000	-100,000	42,054,000	계속
국 비							
도 비	44,114,000	2,050,000	110,000	10,000	-100,000	42,054,000	
시군비							
기 타	2,400,000		2,400,000	2,4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지역개발기금)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91,200	877,747	613,453	58.8%	613,45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7.5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두마~노성 (지방도645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 발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 사업 기간 : 2018 ~ 2027(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000천원(도비 13,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3,000천원
 - ※ 증감 사유 : 실시설계용역 및 연계용역(교통영향평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비 낙찰차액 감액
- 두마~노성 → 당진~서산(보상비)로 낙찰차액 지구간 조정
- 사업 량 : 4차로 확장 L=9.25km, B=11m~13.75m, 교량 5개소(L=245m), 터널 1개소(L=1,63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두마~노성(지방도 645호) 확·포장공사 L=9.25km, B=11m~13.7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공사(13,000천원) ○ 부대비 : 1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3,453,400	2,120,000	460,000	13,000	-447,000	101,320,400	계속
국 비							
도 비	103,453,400	2,120,000	460,000	13,000	-447,000	101,320,4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00	1,587,587	212,413	88.1%	212,41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8.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무창포IC~웅천 (지방도606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서여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 구룡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7 ~ 2024(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80,000천원(도비 78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780,000천원
 - ※ 증감 사유 :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기간(약 6개월) 소요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구간 조정
- 무창포IC~웅천 → 당진~서산(보상비)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9.6km, B=18.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공사 L=1.4km, B=21.75m ~ 23.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창포IC ~ 웅천 지방도(606호) 확포장공사(780,000천원) ○ 시설비 : 770,000천원 ○ 부대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350,000	405,000	1,410,000	780,000	-630,000	7,165,000	계속
국 비							
도 비	8,350,000	405,000	1,410,000	780,000	-630,000	7,16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0,530	177,433	73,097	70.8%	73,0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8.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구룡~용두 (지방도610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8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30,000천원
 - ※ 증감 사유 :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기간(약 6개월) 소요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구간 조정
- 구룡~용두 → 당진~서산(보상비)
- 사업 량 : 4차로 확장 L=1.3km, B=10.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공사 L=1.3km, B=1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공사 (30,000천원) ○ 시설비 : 25,000천원 ○ 부대비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800,000	350,000	505,000	30,000	-475,000	8,420,000	계속
국 비							
도 비	8,800,000	350,000	505,000	30,000	-475,000	8,4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143,353	56,647	71.7%	56,64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8.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화성~장곡 (지방도609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 사업 기간 : 2017 ~ 2024(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5,000천원(도비 65,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65,000천원
 - ※ 증감 사유 :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기간(약 6개월) 소요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구간 조정
- 화성~장곡 → 당진~서산(보상비), 복수~진산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2.4km, B=10.0m, 교량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공사 L=2.4km, B=10.0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공사 (65,000천원) ○ 시설비 : 60,000천원 ○ 부대비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00	330,000	505,000	65,000	-440,000	11,605,000	계속
국 비							
도 비	12,000,000	330,000	505,000	65,000	-440,000	11,60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80,000	201,086	78,914	71.8%	78,91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8.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복수~진산간 (지방도635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역도로 사업 준공 후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연계도로망 확충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 진산면 교천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 ~ 2029.(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50,000천원(도비 55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550,000천원
 - ※ 증감 사유 : 연계용역(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발주에 따른 부족금액 계상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4.46km, B=19.5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공사 L=4.46km, B=19.5m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6조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공사 (550,000천원) ○ 시설비 : 5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7,062,000	120,000	500,000	550,000	50,000	106,392,000	계속
국 비							
도 비	107,062,000	120,000	500,000	550,000	50,000	106,392,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0,000	12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7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홍순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철도 및 물류지원
	세부사업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통 계 목	학술용역비 (207-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서해안 지역의 고속철도망 도입으로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의 합리적 구축에 기여 및 서해안 지역의 철도 수송여건을 획기적 개선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3. ~ 2021.7.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196,000천원(도비 196,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96,000천원
 - ※ 증감 사유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낙찰차액 감액
- 사 업 량 :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환경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사업의 정성적, 정략적 분석,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의 관한 기술적 검토, 노선대안 검토,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선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평가에 따른 종합검토
- 지원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96,000천원)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1식 = 196,000천원 - 학술분야 : 137,200천원 - 기술분야 : 58,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6,000		200,000	196,000	-4,000		신규
국 비							
도 비	196,000		200,000	196,000	-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4월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철도항공물류팀	홍순광 (행) 2830	강민수 (행) 4691	고동환 (행) 2835

토지관리과

토지 관리 과

1. 지적측량 경진대회 운영 186
2. 위치기반 증강현실(AR)플랫폼 운영 188
3.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190
4. 스마트 국토엑스포 홍보관 운영 192
5.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194
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96
7.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98
8.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200
9. 토지관리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02

지적측량 경진대회 운영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고객중심의지적행정 구현
	세부사업	지적측량경진대회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적측량성과 현지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측량 기술 운용능력 경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625천원**(도 11,625)
 - ※ 증감 사유 : 계약 후 집행잔액 감액
- 사 업 량 : 연 1회(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적측량성과 검사 담당 공무원의 측량기술 습득 및 측량장비 운용능력 함양 필요
- 지원 근거 : 국토교통부 지적·공간정보 업무계획(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4030(2018.10.25.))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적측량 경진대회 운영 : 11,625천원 ○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 11,625천원 - 인건비 2,595천원 / 직접경비(기술료, 집기임차료 등) 9,030천원 ※ 계약 후 집행잔액(2,575천원) 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액(A)	3회추경(B)	증감(B-A)		
계	14,200		14,200	11,625	-2,575		
국 비							
도 비	14,200		14,200	11,625	-2,57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500	13,5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	서운석 (행) 2860	이성찬 (행) 4782	박용신 (행) 2862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운영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고객중심의지적행정 구현
	세부사업	위치기반증강현실 플랫폼 운영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공부문 토지·공간정보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융복합하여 구축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 사업 위치 :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시스템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2,910천원(도 42,910)
 - ※ 증감 사유 : 계약 후 집행잔액 감액
- 사 업 량 : 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위치기반 증강현실 기술 및 모바일 앱 랜드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실시간 유지보수 추진
- 지원 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제2항, 충청남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제2항(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 42,910천원 ○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유지관리 = 42,910천원 ※ 계약 후 집행잔액(7,090천원) 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액(A)	3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50,000	42,910	-7,090		
국 비							
도 비	50,000		50,000	42,910	-7,09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0,500	170,5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	서운석 (행) 2860	이성찬 (행) 4782	이완정 (행) 4796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공간정보 기반구축
	세부사업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최신자료 관리와 기능 개선 추진
- 사업 위치 : 통합정보센터 및 본관동 1층, 충남도서관 1층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6,228천원**(도 86,228)
 - ※ 증감 사유 : 계약 후 집행잔액 감액
- 사 업 량 : 5종(공간정보시스템(내부, 외부), 모바일, 원터치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SW의 유지관리 및 주기적 자료 업데이트
- 지원 근거 : 충청남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충청남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 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간정보시스템 5종 ○ 내부망, 외부망, 모바일서비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2종) 등 S/W 유지관리비 · 78,390,000원 × 부가가치세 10% = 86,228천원 ※ 계약 후 집행잔액 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액(A)	3회추경(B)	증감(B-A)		
계	90,300		90,300	86,228	-4,072		
국 비							
도 비	90,300		90,300	86,228	-4,072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00	52,250	7,750	87.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서운석 (행) 2860	고재성 (행) 4784	유준규 (행) 2864

스마트 국토엑스포 홍보관 운영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구현
	단위사업	공간정보 기반구축
	세부사업	스마트 국토엑스포 홍보관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도 공간정보 분야의 선진 활용기술 등 대국민 홍보
- 사업 위치 : 서울 코엑스(스마트 국토엑스포 행사장)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0.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 사 업 량 : 홍보관 운영(부스임대, 리플릿 및 홍보물 등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국토엑스포에 충남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 도의 우수한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홍보
- 지원 근거 : 스마트 국토엑스포 개최(국토교통부 주최) 및 내부방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부스설치 및 부대비용(사무관리비(201-01)) : 27,000천원 ○ 코로나 19로 인하여 행사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액(A)	3회추경(B)	증감(B-A)		
계	27,000		27,000	0	-27,000		
국 비							
도 비	27,000		27,000	0	-27,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6,600	26,6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서운석 (행) 2860	고재성 (행) 4784	유준규 (행) 2864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공간정보 기반구축
	세부사업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토지의 변화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과거 항공사진을 시계열 정사영상으로 제작하여 각종 행정업무, 대민서비스 및 충청남도 국토의 효율적 관리
- 사업 위치 : 4개 시군(아산, 금산, 부여, 서천)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7,775천원**(도 152,332, 부 355,443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507,775천원
 - ※ 증감 사유 : 계약 집행잔액 감액
- 사업 량 : 4개 시군 전역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및 시스템 탑재(과거 항공사진 4,207도엽)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도에서 시·군 부담금(70%)을 받아 사업 추진)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용역업체명 : (주)올포랜드 컨소시엄)
- 사업 내용 : 과거 항공사진을 연도별 정사영상으로 제작
- 지원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 제28조 및 시계열 정사영상 공간정보 구축 계획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제(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시설비) : 507,775천원(도 152,332천원, 시군 355,443천원)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용역 계약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07,775		518,258	507,775	-10,483		
국 비							
도 비	152,332		155,477	152,332	-3,145		
시군비							
기 타	355,443		362,781	355,443	-7,338		자치단체간부담금

* 보조율 : 도비 30%, 자치단체간부담금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4,171	380,107	24,064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서운석 (행) 2860	고재성 (행) 4784	한재현 (행) 480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디지털지적구축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도내 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669,970천원(국 4,669,970)
 - ※ 증감 사유 :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당초 예산 배정액에 2차 추가 확정 교부액 증액분 반영
- 사 업 량 : 43개 사업지구 / 23,517필지 / 21,433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100년 전 종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치지를 이용현황대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
- 지원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당초 예산 배정액에 2차 추가 확정 교부액 증액분 반영 ○ 당초 예산배정액 4,448,489천원 - 2차 추가 확정 교부액 4,669,970천원 = 증221,481천원 - 국 4,669,970천원(15개 시·군 / 43개 지구 / 23,517필지 / 21,433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669,970		4,448,489	4,669,970	221,481		
국 비	4,669,970		4,448,489	4,669,970	221,481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20,000	1,220,000	-	100%		2개년 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서운석 (행) 2860	이학주 (행) 4785	김춘호 (행) 4803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드론산업 기반구축
	세부사업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 ~ 2020.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
- 사 업 량 : 민·관 협력 워크숍 등 행사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드론 경진대회, 드론영상 공모전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5조 1항

충청남도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제5조(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드론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워크숍 등) 9,000천원 * 행사취소로 9,000천원 감액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9,000	0	-9,000		
국 비							
도 비	0		9,000	0	-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500	9,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무인항측팀	서운석 (행) 2860	임택빈 (행) 4786	서재완 외 1명 (행) 4808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	정책사업	토지행정선진화구현
	단위사업	드론산업 기반 구축
	세부사업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무인비행장치 최적화를 통한 비행사고 예방 등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183천원**(도 8,183)
 - ※ 증감 사유 : 유지보수 계약 체결(협의) 시 예산절감
- 사 업 량 :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12조 1항, 2항

충청남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 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자원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10,584천원(도) ○ 집행액: 유지보수비(계약체결) 8,183천원 * 집행잔액 2,40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183		10,584	8,183	-2,401		
국 비							
도 비	8,183		10,584	8,183	-2,401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무인항측팀	서운석 (행) 2860	임택빈 (행) 4786	서재완 외 1명 (행) 4808

토지관리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토지관리분야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토지관리분야(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지적관리사업) 비용 절감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사업 위치 : 16개 시·군·구
- 사업 기간 : 2019. 1. ~ 2019. 12.
- 예 산 액 : 467천원(도 467)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반환
- 사 업 량 : 도내 시·군(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 16개 시군구, 지적관리사업 4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여 반납 추진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사업 반환금 : 450천원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 후 이자반환금 : 450천원 - 국고보조금 총액 : 도 6,000천원 + 시군 보조금 1,077,773천원 = 1,083,773천원 ■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 17천원(16,970원) ○ 국고보조금 집행 후 이자반환금 : 16,970원 - 국고보조금 총액 : 도 9,123천원 + 시군 보조금 82,109천원 = 91,23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67		0	467	467		
국 비							
도 비	467		0	467	467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	서운석 (행) 2860	하덕수 (행) 4781	송재빈 (행) 4791
		지적관리팀		이성찬 (행) 4782	박용신 (행) 2862

종합건설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1.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208
2.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210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예산 집행률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률 제고 등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를 통한 건설업 상생발전·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도내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워크숍 진행 지남
- 사 업 량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1식(연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 전액 감액 ○ 워크숍 추진 : 0천원 · 워크숍 추진 제비용 1식 x 0천원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9,000	0	-9,000		
국 비							
도 비	0		9,000	0	-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9,998	2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건설과	시설2팀	김진수 (행) 7530	왕창성 (행) 7538	박재순 (행) 7539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정책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단위사업	고품질건설공사수행
	세부사업	건설공사 수행지원
	통 계 목	행사실비보상금 (301-09)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예산 집행률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률 제고 등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를 통한 건설업 상생발전·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도내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워크숍 진행 지연
- 사 업 량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1식(연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민간인) : 전액 감액 ○ 워크숍 추진(민간인 참가자 식비) : 0천원 · 참가자 식비 1식 x 0천원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1,800	0	-1,800		
국 비							
도 비	0		1,800	0	-1,8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건설과	시설2팀	김진수 (행) 7530	왕창성 (행) 7538	박재순 (행) 7539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공주지소

1.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16
2. 교통안전시설 사업 218
3. 터널 및 교량 전기요금 220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의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320,000천원(소 320,000)
 - ※ 증감 사유 : 행안부 소교세 교부결정(감액)에 따른 감조정
- 사업 량 : 중앙분리대 설치, 낙석방지책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사업 내용 : 도계안내표지판, 경보등, 유지보수용 장비 수리비, 유류비, 소모품 구입 등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320,000천원 ○ 시설비 : 320,000천원 · 중앙분리대 정비 : 270,000원/m x 400 = 108,000,000원(108,000천원) · 가드레일 정비 : 70,000원/m x 800 = 56,000,000원(56,000천원) · 충격흡수시설 정비 : 60,000원/ea x 530ea = 3,180,000원(31,800천원) · 중앙분리대 정비 : 270,000원/m x 460 = 124,200,000원(124,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20,000		400,000	320,000	-80,000		
국 비	320,000		400,000	320,000	-80,000		소방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보수1팀	전상근 (행) 7600	강현수 (행) 7613	강석모 (행) 7615

교통안전시설 사업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의 도로시설(시선유도시설, 안전시설, 노면표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163,000천원(소 163,000)
- ※ 증감 사유 : 행안부 소교세 교부결정(감액)에 따른 감조정
- 사업 량 : 교통안전시설사업(노면표지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사업 내용 : 노면표지 정비사업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 교통안전시설 사업 : 163,000천원 ○ 시설비 : 163,000천원 · 노면표지 정비 : 163,000천원 - 40,000원/㎡ × 4,075㎡ = 163,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63,000		193,000	163,000	-30,000		
국 비	163,000		193,000	163,000	-30,000		소방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3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보수1팀	전상근 (행) 7600	강현수 (행) 7613	강석모 (행) 7615

터널 및 교량 전기요금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터널 및 교량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지도 및 지방도 터널 유지관리에 필요한 터널 조명등, 변압시설 등의 전기요금 지급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179,820천원(도 179,820)
 - ※ 증감 사유 : 터널 조명등 보수공사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지방도 및 국지도 터널 전기요금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사업 내용 : 터널 조명등, 변압시설 등의 전기요금 지급
- 지원 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운영비(터널 및 교량 전기요금) : 179,820천원 ○ 전기요금 : 179,820천원 · 곡두 1,400천원×12월=16,800천원 · 신대 1,350천원×12월=16,200천원 · 인삼 250원×12월=3,000천원 · 덕목 800천원×12월=9,600천원 · 감사 1,370천원×12월=16,440천원 · 낙지 1,430천원×12월=17,160천원 · 셋고개 2,810천원×12월=33,720천원 · 풍세 1,540천원×12월=18,480천원 · 천내 1,000천원×12월=12,000천원 · 부영산 1,480천원×12월=17,760천원 · 덕림 2,680천원×7월=18,6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79,820		219,820	179,820	-40,000		
국 비							
도 비	179,820		219,820	179,820	-4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7,400	150,591	6,809	9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구조물관리팀	전상근 (행) 7600	최성호 (행) 7637	박병현 (행) 7618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홍성지소

1.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26
2.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228
3.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사무관리비	230
4.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	232
5.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자산취득비	234
6. 과적단속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236
7. 과적단속 업무수행 공공운영비	238
8. 청사 화단 및 화장실 환경정비	240
9. 청사 행정통신망 정비(사무실임차)	242
10. 청사 행정통신망 정비(공공운영비)	244
11. 지방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46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 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홍성지소 관할 지방도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83,000천원(소 483,000)
 - ※ 증감 사유 : 안전정책과-7298(2020. 7. 17.) ‘20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조정
- 사 업 량 : 지방도 및 국지도 안전시설물 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지방도 및 국지도 안전시설물 정비
- 지원근거 : 도로법 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설비 : 483,000천원 ◦ 차선도색 정비 : 300,000천원 ※ 홍성지소 관할 국지도 및 지방도(180,000m×0.15m) - 17,900원/㎡ × 27,000㎡ ≒ 48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83,000		500,000	483,000	-17,000		
국 비	483,000		500,000	483,000	-17,000		소방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81,000	1,081,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보수1팀	원종성 (행) 7650	양길태 (행) 7661	문진호 (행) 7662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관리
	세부사업	도로 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홍성지소 관할 지방도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안전정책과-7298(2020. 7. 17.) ‘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조정
- 사 업 량 : 지방도 및 국지도 안전시설물 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지방도 및 국지도 안전시설물 정비
- 지원근거 : 도로법 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설비 : 0천원 ◦ 교통안전표지 설치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100,000	0	-100,000		
국 비	0		100,000	0	-100,000		소방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81,000	1,081,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보수1팀	원종성 (행) 7650	양길태 (행) 7661	문진호 (행) 7662

기계(운전)원 피복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건설장비 운영 및 관리 업무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장비운영요원 피복비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
- 사 업 량 : 장비운영요원 피복비 구입 및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원활한 건설장비 운영 및 관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제2조(장비운영관리)

① 충청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기타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공주지소장과 홍성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하고 집중 관리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장비운영요원 피복비 지급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4,050	0	-4,050		
국 비							
도 비	0		4,050	0	-4,0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740	5,689	51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단속팀	원종성 (행) 7655	조원섭 (행) 7670	최종수 (행) 7673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건설장비 운영 및 관리 업무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3,600천원(도 203,600천원)
 ※ 증감 사유 : 작년 대비 설해 및 제설작업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삭감
- 사 업 량 : 80대 차량 및 건설장비 운용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원활한 건설장비 운영 및 관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제2조(장비운영관리)

① 충청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기타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공주지소장과 홍성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하고 집중 관리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 : 203,600천원 ○ 도로유지보수장비 수리비 : 130,000천원 · 1,625천원 × 80대 = 130,000천원 ○ 도로유지보수장비 유류비 : 70,000천원 · 1,250원(경유) × 56,000ℓ = 70,000천원 ○ 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 3,600천원 · 300천원 × 12회 = 3,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3,600		243,600	203,600	-40,000		
국 비							
도 비	203,600		243,600	203,600	-4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100	198,110	1,990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단속팀	원종성 (행) 7655	조원섭 (행) 7670	최종수 (행) 7673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자산취득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건설장비 구입 및 교체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90,900천원(도290,900천원)
※ 증감 사유 : 건설장비 구입 및 교체 추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 사 업 량 : 건설장비 구입 및 교체 총 6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15톤 트럭 1대, 제설장비 4대, 다목적승용차 1대 구입 및 교체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제2조(장비운영관리)

① 충청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기타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공주지소장과 홍성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하고 집중 관리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자산취득비 : 290,900천원 ○ 15톤 덤프트럭 123,000천원 × 1대 = 123,000천원 ○ 15톤 모래살포기 52,950천원 × 2대 = 105,900천원 ○ 제설기 9,330천원 × 3대 = 28,000천원 ○ 다목적승용차 34,000천원 × 1대 = 3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90,900		315,000	290,900	-24,100		
국 비							
도 비	290,900		315,000	290,900	-24,1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8,700	298,765	69,935	8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단속팀	원종성 (행) 7655	조원섭 (행) 7670	최종수 (행) 7673

과적단속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과적단속 업무수행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0천원(도 400천원)
 - ※ 증감 사유 : 과적차량 체납과태료 전자압류 시스템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
- 사 업 량 :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180건, 120,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지원근거 : 도로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8조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8조(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회계법령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과적단속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 400천원 ○ 이동단속 시스템 사용료 33.3천원 × 12월 = 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0		2,700	400	-2,300		
국 비							
도 비	400		2,700	400	-2,3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00	2,7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단속팀	원종성 (행) 7655	조원섭 (행) 7670	김동규 (행) 7671

과적단속 업무수행 공공운영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과적단속 업무수행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축중기 교정검사 및 수리 등을 통한 과적단속 분쟁 해소 및 신뢰성 확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600천원(도 5,600천원)**
※ 증감 사유 : 축중기 교정, 편차, 고장수리 등 집행잔액 삭감
- 사 업 량 : 교정점검 1회, 편차확인 6회, 수리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과적단속 분쟁 해소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축중기 운용
- 지원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계량의 관한 법률 제4절 제30조, 계량의 관한 법률 제6절 39조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계량의 관한 법률 제4절 제30조 (정기검사)

-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량의 관한 법률 제6절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과적단속 업무수행 공공운영비 : 5,600천원 ○ 교정점검 수수료 : 100천원 × 4ea × 2식 = 800천원 ○ 편차확인 수수료 : 100천원 × 8ea × 3회 = 2,400천원 ○ 고장수리비 : 2,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600		13,600	5,600	-8,000		
국 비							
도 비	5,600		13,600	5,600	-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700	5,7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단속팀	원종성 (행) 7655	조원섭 (행) 7670	김동규 (행) 7671

청사 화단 및 화장실 환경정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
	통 계 목	인건비 (101-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 사업 위치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1,500천원(도 11,500천원)
 ※ 증감 사유 :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급여액 감소(일주일 중 2일근무)
- 사 업 량 : 홍성지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홍성지소 청사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사 화단 및 화장실 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 보수) : 11,50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 958.3천원 x 12개월 = 1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500		16,452	11,500	-4,952		
국 비							
도 비	11,500		16,452	11,500	-4,952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500	9,156	2,344	7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서무팀	원종성 (행) 7650	한희숙 (행) 7659	이만규 (행) 7660

청사 행정통신망 정비(사무실임차)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리모델링 기간 사무실 임차비용
- 사업 위치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홍성지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 기간동안 사무실 임차를 하지 않고 공사 진행
- 사 업 량 : 홍성지소 청사 리모델링 사무실 임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홍성지소 청사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임차비용 : -천원 ◦ 청사 행정통신망 정비(사무실임차)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8,000	0	-18,000		
국 비							
도 비	0		18,000	0	-1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서무팀	원종성 (행) 7650	한희숙 (행) 7659	이만규 (행) 7660

청사 행정통신망 정비(공공운영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리모델링 기간 행정통신망 정비비용
- 사업 위치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행정통신망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여 공사 진행하여 전액 삭감
- 사 업 량 : 홍성지소 청사 리모델링 행정통신망 정비 비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홍성지소 청사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행정통신망 정비비용 : 0천원 ◦ 청사 행정통신망 정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30,000	0	-30,000		
국 비							
도 비	0		30,000	0	-3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서무팀	원종성 (행) 7650	한희숙 (행) 7659	이만규 (행) 7660

지방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기간 : 2020.01.01.~2020.12.31
- 예 산 액 : 45,000천원(도 45,000)
 - ※ 증감 사유 : 청사 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사 업 량 : 청사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청사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상하수도 사용료, 각종 통신요금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운영비 : 45,000천원 ○ 전기요금 : 1,500천원 x 12개월 = 18,000천원 ○ 상하수도 사용료 : 1,000천원 x 12개월 = 12,000천원 ○ 우편요금 : 200천원 x 12개월 = 2,400천원 ○ 전기안전점검수수료 : 160천원 x 12개월 = 1,920천원 ○ 기타(유선방송 수신료, 건물 수리수선 등) : 10,68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5,000		70,820	45,000	-25,820		
국 비							
도 비	45,000		70,820	45,000	-25,82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1,000	44,236	6,764	8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서무팀	원종성 (행) 7650	한희숙 (행) 7659	이만규 (행) 7660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1. 태안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252
--------------------------	-----

태안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단위사업	무인조종산업 기반구축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	무인조종 활성화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드론산업, 무인조종 자동차 등을 포함한 국내 유일의 무인조종 종합시설 조성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1-6번지 외(태안기업도시 내)
- 사업 기간 : 2018.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50,000천원**(도 2,150,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4,300,000천원
 - ※ 증감 사유 : 본예산 미편성 분 추가편성
- 사 업 량 : 115,703㎡(무인조종체험전시관, 드론스쿨·드론레이싱 순환로, 무인비행기 전용활주로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무인조종의 체험·교육, 이벤트 등이 가능한 종합공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 2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태안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사업: 9,500,000천원(도 4,750,000, 시군 4,750,000) ○ 부지성토공사 (115,703㎡) : 800,000(천원) ○ 부대토목(주차장, 드론스쿨, RC자동차 서킷 등) 공사 (115,703㎡) : 4,700,000(천원) ○ 건축공사(전기.통신.소방) (1,523㎡) : 4,000,000(천원)	(도비) 47.5억 - 18년 4억 - 19년 22억 - 20년 6.5억 - 추경15억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500,000	5,200,000	1,300,000	4,300,000	3,000,000		
국 비							
도 비	4,750,000	2,600,000	650,000	2,150,000	1,500,000		
시군비	4,750,000	2,600,000	650,000	2,150,000	1,500,000		
기 타							

* 보조율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780,000	583,747	4,196,253	12%	4,196,25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7.7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무인항측팀	서운석 (행) 2860	임택빈 (행) 4786	서재완 외 1명 (행) 480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 징수교부금(수입액 3%) 258
2. 국고 귀속분 부담금(수입액 40%) 26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2

정수교부금(수입액 3%)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부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리
	통 계 목	정수교부금 (308-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 4개시군(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광역시설부담금 징수업무 시·군 위임사무로 부담금 징수 금액의 3% 시·군 교부토록 규정
- 사업 위치 : 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525천원(도 7,525)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7,525천원
 - ※ 증감 사유 : 부과된 부담금의 추가 납부액 반영
- 사업 량 : 4개 시·군 교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년 광역시설부담금 징수액의 3%를 시·군에 정수교부금 편성 교부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 ①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정수교부금(수입액 3%) ○ 정수교부금 · 징수금 250,808천원 × 3% = 7,52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525		6,780	7,525	745		
국 비							
도 비	7,525		6,780	7,525	745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84	2,957	727	80.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종인 (행) 2840	이승철 (행) 4571	남정민 (행) 4573

국고 귀속분 부담금(수입액 40%)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부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리
	통 계 목	기타부담금 (308-1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 4개 시군(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징수된 광역시설부담금의 40%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
- 사업 위치 : 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324천원(도 100,324)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100,324천원
 - ※ 증감 사유 : 부과된 부담금의 추가 납부액 반영
- 사업 량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국고 귀속분(수입액 4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년 광역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가에 귀속
- 지원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 귀속분 부담금(수입액 40%) ○ 징수교부금 · 징수금 250,808천원 × 40% = 100,32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324		90,400	100,324	9,924		
국 비							
도 비	100,324		90,400	100,324	9,924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286	34,540	20,746	62.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종인 (행) 2840	이승철 (행) 4571	남정민 (행) 45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부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리
	통 계 목	예탁금(704-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신규 사업)
- 예 산 액 : 75,000천원(도 75,000)
 - ※ 시군비 등 포함 '20년 총사업비 : 75,000천원
 - ※ 증감사유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탁금 예산 계상
- 사 업 량 : 예탁금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간, 회계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 75,000천원(도 75,000) ○ 예탁금 : 75,000천원 × 1식 = 75,000천원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 (B)	증감(B-A)		
계	75,000		0	75,000	75,000		
국 비							
도 비	75,000		0	75,000	75,000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종인 (행) 2840	이승철 (행) 4571	남정민 (행) 457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교부금 268
2.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70
3.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272
4.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274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교부금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교부금
	통 계 목	법정전출금 (7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0.01.0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840,000천원(도 10,840,000)
 - ※ 증감 사유 : 천안 한들초 부지매입 관련 소송중으로 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한들초 부지매입비 감액
- 사 업 량 : 신설 학교용지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사업 내용 : 도내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등으로 교육청에 교부
- 지원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제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교부금(법정전출금) : 10,840,000천원 ○ 학교용지부담금 : 10,840,000천원 · 천안 성성2초 학교용지 매입예정대금(21,680,000천원)의 1/2 10,8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840,000		18,693,000	10,840,000	-7,853,000		
국 비							
도 비	10,840,000		18,693,000	10,840,000	-7,853,000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307,057	14,081,591	8,225,466	6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 2820	노윤철 (행) 4641	이동훈 (행) 4652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통 계 목	징수교부금 (308-0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01.0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3,479천원(도 153,479)
 - ※ 증감 사유 : '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결정액을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조정
- 사 업 량 : 5개 시·군 교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사업 내용 : 시·군에서 징수한 '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를 '20년도에 징수교부금 편성 시·군 교부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제2항

충청남도 학교용지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사무의 위임)

- ① 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② 충청남도지사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 153,479천원 ○ 징수교부금 : 153,479천원 · 징수금 5,115,937천원 × 3% = 153,479천원		
	구분	징수금	징수교부금
	계	5,115,937	153,479
	천안시	3,242,465	97,274
	아산시	316,010	9,480
	서산시	984,488	29,535
	홍성군	509,752	15,293
	태안군	63,222	1,89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3,479		300,000	153,479	-146,521		
국 비							
도 비	153,479		300,000	153,479	-146,521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0	446,900	3,100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 2820	노윤철 (행) 4641	이동훈 (행) 4652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통 계 목	일반예비비 (801-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 기간 : 2020.01.0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 0)**
 - ※ 증감 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20.6.09,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만 반영) 및 예산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자금 예탁금 편성을 위해 예비비 감액
- 사 업 량 : 예비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사업 내용 : 특별회계 운영상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 제5항

충청남도 학교용지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예비비 : 0천원(전액 감액)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12,403,710	0	-12,403,710		
국 비							
도 비	0		12,403,710	0	-12,403,710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644,943	-	15,644,943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 2820	노윤철 (행) 4641	이동훈 (행) 4652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정책사업	주택 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통 계 목	예탁금 (704-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 사업 기간 : 2020.01.0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00천원(도 20,000,000)
- ※ 증감 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20.6.09)으로 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도 예탁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청교부금 및 예비비 감액 금액을 예탁금 편성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자금 예탁
- 사 업 량 : 예탁금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사업 내용 : 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자금 예탁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간, 회계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2020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 20,000,000천원 ○ 예탁금 : 20,000,000천원 · 20,000,000천원 × 1식 = 20,000,000천원 *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신규
국 비							
도 비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윤영산 (행) 2820	노윤철 (행) 4641	이동훈 (행) 4652